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새로운 취급에 대하여



2022년 6월 22일
출입국재류관리청

Immigration Services Agency of Japan

현상 · 대응 방침

◎ 출입국재류관리청은 현재까지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 확대 영향으로 인해 일본으로 입국하는 시기가 늦어진 분을 배려하여 입국 수속에 필요한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이하 '인정증명서' 라고 한다.)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 금번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증명서 유효기간의 추가적인 연장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아래 '새로운 취급' 참조), 2022년 8월 1일 이후에 작성된 재류자격인정증명서에 대하여는 작성일부터 '3개월간' 유효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 다만, 인정증명서는 교부 시점의 상륙을 위한 조건에 대한 적합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효로 간주하는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화될 경우, 인정증명서 교부 시의 상황과 입국 시의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새로운 취급 시행 이후 인정증명서 유효기간의 추가적인 연장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번 신청 내용에서 변경이 없고 2023년 1월 31일까지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①이미 교부받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원본 또는 사본) 및 ②받아들이는 기관 등이 작성한 이유서를 제출하면 신속하게 새로운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의 취급	새로운 취급
①대상이 되는 재류 자격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대상이 되는 모든 재류 자격	① 대상이 되는 재류 자격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대상이 되는 모든 재류 자격
②대상 지역 모든 국가·지역	②대상 지역 모든 국가·지역
③대상이 되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작성된 것	③대상이 되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작성된 것
④유효로 간주하는 기간 - 작성일이 2020년 1월 1일~2022년 1월 31일 → 2022년 7월 31일까지 - 작성일이 2022년 2월 1일~2022년 7월 31일 → 작성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	④유효로 간주하는 기간 작성일이 2020년 1월 1일~2022년 4월 30일 → 2022년 10월 31일까지 작성일이 2022년 5월 1일~2022년 7월 31일 → 작성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
⑤유효로 간주하는 조건 재외공관에서 사증(비자) 발급 신청 시에 받아들이는 기관 등이 “앞으로도 계속,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시의 활동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u>참고 양식 <별표 제1의 재류 자격(예: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유학 등)용></u> <u>참고 양식 <별표 제2의 재류 자격(예: 일본인의 배우자 등, 정주자 등)용></u> ※비자를 신청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다시 위 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⑤유효로 간주하는 조건 재외공관에서 사증(비자) 발급 신청 시에 받아들이는 기관 등이 “앞으로도 계속,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시의 활동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기재한 다음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u>별첨 양식 <별표 제1의 재류 자격(예: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유학 등)용></u> <u>별첨 양식 <별표 제2의 재류 자격(예: 일본인의 배우자 등, 정주자 등)용></u> ※비자를 신청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다시 위 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